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종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 이자를 적용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업무인계 미비, 회사사물품 미반납, 금품 미정산시에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사내 퇴직금 규정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음.

☞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031-877-7582-3)

Q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A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하여 다른 세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취업하려는 것을 종전에 취업하였던 세무사사무소에서 방해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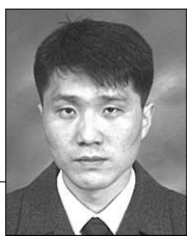
따라서 종전 세무사사무소에서 다른 세무사사무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동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Q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수요관리과장 **나현철**



러위하면 조영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손질을 게을리 하면 20-30 퍼센트 정도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광등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므로 자주 닦아주면 조영이 훨씬 밝아집니다.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65~70%의 절전이 가능하고, 8배의 수명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램프 여러개보다 큰 것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지 않는 가전기는 플러그를 빼어 대기전력 감소: 전원을 꺼도 플러그를 통해 소모되는 전력을 대기전력이라고 하며 가정소비전력의 약11%를 차지합니다. 대기전력만 효과적으로 줄여도 한달은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마크는 대기전력을 최소화한 제품이 부착되므로 가전제품을 구입할때는 꼭 에너지절약마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의: 포천지점 수요관리과(031-539-0231)

TV 전력소모를 줄이는 방법

잠시라도 시청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끕니다. 외출이나 취침을 할 때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완전히 빼어 전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화면이 너무 밝거나 소리가 너무 커도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냉장고 구입시에는 반드시 전력소비 용량을 확인: 냉장고는 제작사, 모델, 용량별로 월간소비전력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월간소비전력의 차이에 따라 에너지

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가 달라집니다. 1등급제품을 구입하면 5등급제품에 비하여 30~45%의 에너지가 절약되므로 반드시 효율등급을 확인하여 가급적 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세탁기 관리: 일반세탁물의 세탁시간(탈수시간제외)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세탁량에 따라 소모되는 전기량은 큰 변화가 없으므로 세탁물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합니다.

▲조명기구 관리: 조명기구가 먼지로 더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네번째 주의 치료는 통합 치료입니다. 즉 기존의 약물치료, 스프레이요법, 코세척요법, 코밴드 치료 등의 보완요법과 더불어 면역치료와 비염 완화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건강 보조식품중 면역조절 식품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환자 교육을 통해 어떻게 치료하고 조절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필자의 단기적인 목표는 비염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에 대한 나름의 프로토콜인 '4주 비염치료 코스'를 통해 비염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나 환자들의 건강한 호흡을 돕는 것입니다. 비염은 낫지 않는 병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병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 특히 공부하는데 코가 막혀 고생하는 많은 비염을 가진 수험생을 포함한 비염 환자, 환자의 코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최상의 비염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의: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9)

비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2)

두번째 주에 시작되는 유지요법의 목적은 약물치료를 통해 얻은 증상의 호전을 3달이상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유지요법의 주 골격은 스프레이 치료와 생리 식염수 코세척입니다. 스프레이는 코점막안에 하루에 한번씩 약리 성분을 분무하여 비강점막의 과민성을 떨어뜨리는 치료입니다. 보통 아침에 한쪽 콧구멍에 성인기준으로 두번씩 분무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통을 1달이면 모두 쓰게 되는데 이 1달간의 치료로 3달 이상의 증상의 개선과 치료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녁에는 생리식염수 코세척을 시

행합니다. 생리식염수 코세척의 비염에서의 유용성은 이미 수십편이 넘는 과학적인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필자 또한 환자를 모아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고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세번째 주의 치료는 앞서 2주간의 단기, 중기 치료의 효과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치료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요법과 면역요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요법은 자신의 환경에서 코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항원이나 유발물질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며 면역요법은 항원자극에 대해 체내의 면역기능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주사요법입니다.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잡종지의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 체결 등의 시효이익의 포기여부】

Q 저는 23년 전 甲으로부터 밭 200평을 매수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년 전 군청직원으로부터 제가 국가의 잡종재산인 토지 50평 정도를 침범하였다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제가 그 토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그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원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의 잡종재산도 민법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이 준용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그러므로 귀하는 국유의 잡종재산인 토지 50평을 20년 이상 평온, 공인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점유자가 국유의 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국가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유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국가의 승낙 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他主占有)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8.4.10. 97다52936), 또한 국유 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유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88.3.10. 97다53304)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1회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였다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변상금까지 납부한 귀하의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문의: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청소년 성보호법】 중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A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성범죄를 확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대상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모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

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등록이 되어 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청소년 성보호법】 중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

A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같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찰 경찰서에 가면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 집행 후 5년간 열람이 가능하며, 13세 미만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을 할 수 있고, 시·군·구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저는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30대 가정입니다. 조금의 여유자금에 있어 아이를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주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A 그렇습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특히 펀드투자와 같이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의 경우 즉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재산 증여 시 10년동안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

습니다. 다만 증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그 입증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가 해당 금액을 인출해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시기'가 돼 펀드에 투자한 원금에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펀드에 투자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펀드에 가입한 뒤 재산이 증식된 경우 증가된 이익 상당액도 증여에 해당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추가적인 투자행위 없이 해당 펀드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추가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실한 납세의무가 곧 끝내의 최선의 방법입니다.☞문의: 세무사 박운중(031-872-6116)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모집공고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찬)는 언제나 바른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운영위원회 설립목적에 맞도록 활동할 운영위원을 공개모집 (모집인원 〇명)합니다.



- 위원장: 박승찬
- 부위원장: 나근수
- 상임고문: 최호열
- 고문: 이상갑
- 고문: 배성호
- 고문: 유병호
- 고문: 이종희
- 감사: 이희선
- 총무: 이수복
- 부총무: 임대섭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위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